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5909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 고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규호

변 론 종 결 2014. 1. 13.

판 결 선 고 2014. 2. 1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8, 13, 15, 18,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면서 2013. 5. 25.부터 2013. 11. 2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45dB에서 최고 72.8dB에 달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소음발생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음을 발생시킨 경위, 소음의 발생기간 및 정도,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정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참작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4.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거지를 촬영함으로써 피고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인